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과 중국 간의 어업분쟁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2017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해양수산경영학과

ZHANG LINLIN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Management

A Study on Disputing Resolution of Fishing between Korea and China

by
ZHANG LINLIN

Department of Marine Business and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017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과 중국 간의 어업분쟁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병호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해양수산경영학과

ZHANG LINLIN

목 차

ABSTRACT -----	vii
제 I 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가. 연구의 배경 -----	1
나.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2
제 II 장 <한중어업협정>의 내용과 양국 어업에 미친 영향 -----	3
제1절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한 배경 -----	3
제2절 <한중어업협정>의 성격 -----	5
제3절 <한중어업협정>의 내용 -----	5
가. 수역의 구분 및 권리와 의무 -----	6
나. 관리방법 -----	7
다. 한중어업공동위원회 -----	7
제4절 어업협정의 문제점 및 양국에 미친 영향 -----	8
가. 어업협정의 문제점 -----	8
나. 어업협정은 양국의 어업에 미친 영향 -----	8
제 III 장 한국과 중국의 허가어업 관리제도의 비교 -----	12

제1절 한·중 어업허가의 제도적 의의와 성격-----	12
가. 어업허가제도의 의의-----	12
나. 어업허가제도의 성격-----	13
제2절 한국과 중국의 어업 허가제도의 비교-----	13
가. 한국 어업허가제도-----	13
나. 중국 어업허가제도-----	16
다. 주요 차이점-----	19
제3절 한국과 중국의 연구 연근해 어업현황-----	19
제Ⅳ장 한국과 중국 어업분쟁의 성격과 내용-----	21
제1절 한국과 중국 어업분쟁의 성격-----	21
제2절 한국과 중국 어업분쟁의 종류 및 현황-----	21
가. 불법어획의 종류-----	21
나. 어선 분쟁규모가 크다-----	22
다. 폭력적 충돌이 빈발하다-----	23
라. 조업 조건을 위반 -----	23
제3절 한·중 어업분쟁의 요인-----	24
가. 환경적 요인-----	24

나. 수산자원 감소-----	26
다. 이어도(쑤옌자오)에 영유권 분쟁-----	29
라. 어업 종사자의 변화 -----	30
마. 어업회사의 임금체계-----	32
바. 중국 어업관리제도의 문제-----	34
 제4절 한·중 어업분쟁의 추세와 전망-----	35
 제V장 한국과 중국 어업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	35
제1절 한국과 중국 상호입어의 현황-----	35
가.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한국 입어현황-----	35
나.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국어선의 입어현황-----	36
 제2절 어업분쟁 관련 양국의 법률 및 문제점-----	37
가. 한국-----	37
나. 중국-----	38
 제3절 한국과 중국 양국은 불법조업에 대응 동향 -----	41
가. 강화 감독-----	41
나. 처벌 강화 -----	44
 제4절 한국과 중국 어업협력 방안-----	46

가. 한·중 어업협정의 의의-----	46
나. 한·중 어업협력 방안-----	48
 제VI장 결론-----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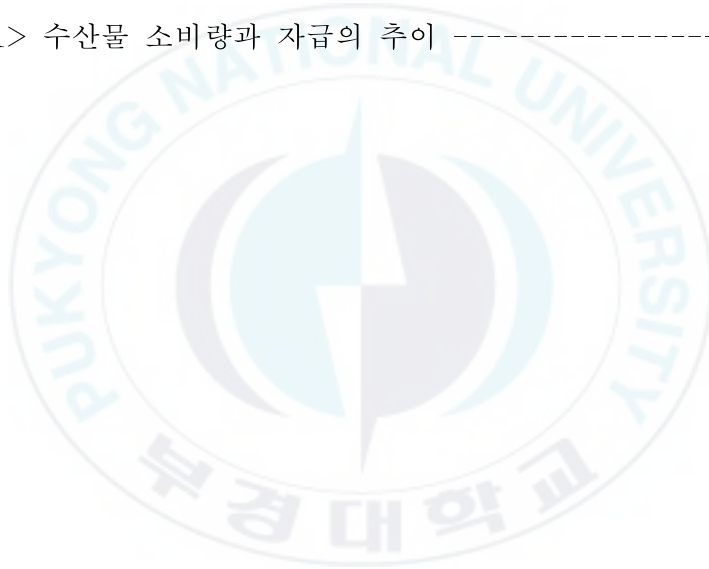
표 목 차

<표3-1> TAC 제도하의 한국 총 허용어획량 -----	16
<표4-2>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현황 (2008년~2015년) -----	22
<표5-1> 01년 이후 한국어선 입어 규모 -----	36
<표5-2> 01년 이후 중국어선 입어 규모 -----	36



그 립 목 차

<그림3-1> 1999-2015년 한국 근해어획량 -----	20
<그림3-2> 1999-2015년 중국 연근해어획량 추이 -----	20
<그림4-1> 2011-2015년 입해 배출구의 유형에 따라 배출기준 합격 횟수의 비율 -----	25
<그림4-2> 2015년 5월과 8월에 입해 배출구에 근처 수역 수질 등급	26
<그림4-3> 중국 4대 해역의 어업자원 -----	27
<그림4-4> 2010-2015년 중국 어업인구 -----	31
<그림5-1> 수산물 소비량과 자급의 추이 -----	48



A Study on Disputing Resolution of fishing between Korea and China

ZHANG LINLIN

Department of Marine Business and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1992,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 with China. The UNCLOS pass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82. Since then, there has been a new fishery order and a series of new institutions such as Exclusive Economic Zone started. Under the new ocean law system, more and more disputes occurred between China and Korea to protect themselves'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as well as differentiate each boundary of Exclusive Economic Zone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a result, two countries signed China-Korea Fishery Agreement, which divided the temporary sea area to maintain a normal fishery order between China and Korea.

Due to the decline of Fisheries Resources along the Coast of China, illegal fishing activities of Chinese fishermen happen more frequently and the situation tends to be more and more violent. Since Korea-China Fishery Agreement came into force in 2001, conflicts occurred persistently among Chinese fishermen, Korea marine Police and Korea fishermen. In September 2008, when Marine Police was checking the Chinese fishing boats, there was a conflict with seamen and the police was stabbed by the knife. On March 3, 2011, the Korea marine Police shot at a Chinese seamen for the first time. On September 29, 2016, when Chinese fishermen made the illegal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Korea, the Korea marine Police intercepted them and

threw three sonic bombs for warning. The fishing boat caught fire and it led to three seamen death. In these fisheries conflicts, Chinese fishermen had gotten expelled, detained, fined and shot up by the Korea marine Police. Why do Chinese fishing boats keep on operating illegally in Korean waters regardless of the danger? What's the problem with Chinese fisheries management? In this paper, Analysis will be performed to understand the Fisheries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as well as find the difference by contrasting their fishery license management system. It will also clarify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 proposal for reasonable solutions.

Key Words: Korea-China fishery dispute, <Korea-China Fishery Agreement>,



제 I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한·중 어업의 분쟁 역사가 유구하고 2000년에 한국과 중국이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한 후 한국과 중국의 충돌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점차 폭력적, 조직적으로 변하였다.

한국 해양 경계안전부 단속에 따라 2001년부터 중국 불법어선의 수량이 174척에서 2015년의 568척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한중어업협정>을 체결 이후에 중국 불법조업 폭력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아래는 근년간의 어업 분쟁 사건이다.

2008년 9월, 한국 해양경찰이 중국 어선을 점검했을 때 선원과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칼에 상처를 받았다.

2010년 12월 18일, 한국 해양경찰과 중국어선 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중국 어민 10명이 물에 빠졌다. 그 중 2명은 제때 구조하지 못해 사망하였다.

2011년 3월 3일, 한국 어업법이 개혁되어 한국 해양경찰이 총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래로 한국 해양경찰이 처음으로 사격을 하였고 중국 선원 1명을 명중시켰다.

2011년 11월 16일, 중국 어선은 한국 해양경찰에 저항하기 위하여 어선들을 서로 연결하여 묶은 방식으로 한국 영해를 침범하였다.

2011년 12월 12일, 중국어선이 불법어획을 할 당시, 한국 해경 1명이 중국 어민에 의해 습격을 당하여 사망하였고, 다른 1명은 복부에 칼을 맞았다.

2012년 4월, 한국의 공무원 4명은 황해 수역에서 불법중국 어선을 제압하던 중 중국 선원에게 사격을 당했다. 중국 선원 9명이 체포되었고, 2012년 압류된 중국 어선은 200여척에 달했다.

2013년, 목포해양경찰은 중국 불법조업 어선 77척을 단속했다.

2014년 5월, 한국해양경비안전국 통계에 의하면, 5월 2주간 압류 된 중

국 어선은 2300여척에 달했다.

2016년 9월,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남서쪽으로 70km 지점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 해경은 불법 어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향해 섬광 폭음탄(폭음탄 1발은 100cd의 강한 빛과 150db 이상의 폭발음을 낸다. 그 위력은 수류탄과 비슷하며, 폭발 시 나는 강렬한 빛은 상대방의 시선을 순간적으로 차단한다.) 3발을 안으로 던져 경고를 하였는데, 중국 어선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중국 선원이 3명 숨졌다.¹⁾

한국은 중국의 불법어획을 제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단속 이외에 고액의 벌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1월에 한국 해역은 절강 수송선을 막아서 8000만원을 부과하였다. 2012년 5월에 한국 군산 해양경찰은 청도 서남 해역에서 해산물 수송선을 압류하고 벌금 4000만원을 부과하였다.

나. 연구 목적

빈번한 한·중 어업 충돌에 따라 폭력적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 왜 중국 어선들은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하여 한국해역에 침입하여 불법조업을 하는가, 게다가 왜 한국의 고액의 벌금을 마주 하고서도 수입이 높지 않은 어민들은 계속 경계를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는가, 중국의 허가어업 관리제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한·중 허가어업의 관리 제도를 비교하여 차이점 및 합리적인 건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

중국 불법어업을 개선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양국 어업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986년에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을 건립하고 종합법으로 여러 영역에 대한 상세히 규정을 하고 특히 어민의 어획 문제에 대한 규정을 하였다.

2001년 6월 30일에 정식으로 시행된 <한중어업협정>은 한중간의 영해

1) <http://blog.naver.com/choisttt/2208242694681>

에 대하여 구분 지었다. 또한 각 영해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새로운 어업질서를 설립하였다.

2002년에 농업부는 <어업어획허가관리규정>을 공포하고 어획 허가에 대한 명확히 규정을 하였다. 이 규정은 어업 자원 보호 및 한중 어업의 발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은 한중 어업허가 제도의 비교 및 한중 양국은 불법어업에 대한 관련 있는 법률의 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사례분석, 비교연구, 법률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Ⅱ장 <한중어업협정>의 내용과 양국 어업에 미친 영향

제1절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한 배경

신항로가 개척되기 전에, 지구의 몇몇 대륙은 해양 분계선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15세기경 신항로 개척에 의하여 미주 대륙이 발견되었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 해상강국이 식민 통치를 진행하였고, 해상 중요항로를 통제하게 되었다. 그 이후 네덜란드, 영국 등 해상강국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해양 소유권의 단맛을 본 각국에서 해상 권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전쟁을 시작하였다.

1600년대 Hugo Grotius (1583-1645)는 <해양자유론>을 발표하였는데, 해양자유에 관점을 명확하게 제기하였다. “바다는 점유할 수 있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하였고, 흐르는 물과 해양, 공기와 태양빛 등은 자연법에서나 만민법에서도 공공의 것 또는 공유물이라고 하고, 전 인류의 협의에 의해 영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며 사적인 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역사 발전에 따라서 이 관점은 다수의 국가에서 받아들였고, 1930년 국제연맹에서 국제 법을 편찬했을 때 영해의 정의와 법적 성격은 이미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소 양국이 장기간 대치하고 있어서 각 나라는 해양권익에 대한 이해가 이전과 같지 않았고 초

강대국들이 각 대양에서 경계를 나누었다. 그리하여 완벽한 국제법 규범의 편찬 및 끊이지 않은 해양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UN은 적극적으로 조직 및 창도하였고 1958년부터 1982년까지 UN에서 3차례 해양법 회의를 개최하였다. 여러 역사적 이유로 인하여 회의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198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역사적인 국제법문서 <UN해양법공약>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국제 항행이 적용된 해협, 군도 국, 폐쇄해나 반 폐쇄해, 내륙 국가가 해양으로 진출입시의 권익과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자유, 국제 해저 및 해양과학연구, 해양 환경보호와 안전, 해양 기술의 발전과 양도 등이 있다.

그 중 확정된 주요 내용은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이다. 제57조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지 않은 해역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연해 국가가 탐사, 개발, 보수, 해저와 하층토 및 위에 있는 수역의 자연자원의 관리의 주권 및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다.

1999년 초까지 전 세계 80개 국가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21개 국가는 배타적 어장을 선포했다. 세계 바다의 36%가 인근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변했다.²⁾ 그러나 해상 접속 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침에 대한 분쟁이 점점 더 치열해졌다. 중국은 1996년 5월에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을 반포하고 그 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1996년 6월에 한국은 <UN해양법협약>을 승인하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도 선포하였다.

한·중 양국은 동해와 서해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역사적 이유 등으로 인해 1991년에야 비로소 양국은 정식으로 수교를 시작하였다. 양국 간의 거리로 말하자면 산둥성 위해시의 “성산두 (成山頭)”가 한국으로부터 94해리에 불과하여 양국 간에 제일 가까운 곳이며 양국 간 가장 먼 지점도 400해리를 넘지 않는다. 게다가 양국 간의 황해와 동해가 어장이 가장 많이 있고 참조기, 부세, 오징어 등이 많이 나고 한중 양국의 많은 경제성 수산품의 주요 원산지이다. 한국에 인접한 대흑산 등의 어장은 예로부터 중국 어민의 전통 어획조업 어장이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탄생한

2) 李浩宇 魯直;專屬經濟區 新世紀的熱點[N]; 中國漁業報; 2004年 5

후로는 한국이 중국 어민들의 흑산 어장에서의 조업을 금지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국 간 해양 경계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수역 분쟁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시적인 법률문서를 반포해야 한다. 2000년 8월 3일 <한중어업협정>은 이런 배경에서 생겨났다.

제2절 <한중어업협정>의 성격

<UN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은 서로 마주하거나 접속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정하기 전에 연안국은 양해와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임시 안배를 하고 또는 이 과도기 안에 마지막 협정의 달성에 손해나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경계의 확정하기에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본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어업협정>은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한·중 양국은 단시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협상을 통해 체결된 일시적인 협정이다. 그 목적은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을 보수하며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상의 정상적 작업 질서를 유지하고 어업영역의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한다.”³⁾

둘째, 기국제도를 설립하여 협정을 위반하면 계약 쌍방의 책임을 확실히 한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상호입어를 허가한다.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합리하게 이용하며 정상적인 해양 질서를 유지하여 어업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⁴⁾

제3절 <한중어업협정>의 내용

<한중어업협정>은 한·중 양국이 분쟁수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협의인 동시에 양국의 최종 해상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 진행된 임시 배분이다. <UN해양법공약>에 의하면 “해당 각국은 양해와 협력적인 정신을 기반으로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임시안배를 진행하고 과도기내에 최종협의달성에 대하여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협정내용을 살펴보면 <UN해양법공약>의 입법정신을 뚜렷하게 나타내며, 양국은 확실하게 실용적인

3) <한중어업협정>

4) <한중어업협정>

합작, 이성적, 합법적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업무를 진행한다.

2001년 6월 30일 24시에 발효되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양국은 최초 5년 만기나 그 후에 1년 앞당겨서 언제든지 서면형식으로 상대국에게 정지 통보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협정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한중어업연합위원회를 설립한다. <협정>의 정문부분은 정문16조, 부록 2개와 양해비망록으로서 총 3부분으로 구성된다.

가. 수역 구분 및 권리와 의무

<협정>의 제1조는 적용한 수역 쟁의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하였다. 협의 된 수역의 면적은 총 24만km²이고 한국 측 주장에 의하면 황해의 면적은 6만km², 동해는 약 18만km²이다.⁵⁾

또한 수역 쟁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였다.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과 “현행조업유지수역”을 분별하게 정한다. 협정은 경위도 좌표점이 직선으로 연결해서 상술(上述)한 구역을 형성한다. “잠정조치수역”은 제7조에 규정한다. 이 수역의 면적이 제일 크고 범위는 북쪽이 북위 37도 00분, 남쪽이 북위 32도 11분, 동쪽이 동경 125도 25분, 서쪽은 동경 122도 01분 54초이다. 대체적 범위는 황해 대부분과 절강 저우산 그리고 한국 제주도간의 동쪽수역을 포함한다. 양국이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 및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과도수역”은 협정의 제8조에 규정한다. “과도수역”은 “잠정조치수역”의 동서 양쪽에 폭이 좁은 수역이고 면적이 비슷하다. 중국 쪽은 약 2.6만km²이고 한국 쪽은 2.9만km²이다. 그리고 협정의 제8조 제2항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객관적 규정을 한다. “과도수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제도를 점점 실시하기 위해 체약 각국은 적당한 조치를 실시하여 체약 상대국 측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 어민 및 어선의 수를 조절 및 감소를 통해 균형유지를 실현해야 한다.” 제5조는 “협정 발효 4년 후에는 과도수역은 제2조와 제5조를 적용하게 한다.” “현행조업유지수역”은 제9조에 규정하여 잠정조치수역의 남 북쪽 양측 구역을 가리킨다. 이 밖에 협정은 양국의 일반성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한다. 예를 들어 제4조는 각 체약국 및 국민의 법이나 협정을 지키는 의무를 규정하고 제10조는 체약국은 의무적으로 자국어민

5) 張揚; 《韓中漁業協定的研究》; 2015. 06. 07

에게 지도하여 정상적 조업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12조는 체약국은 합력을 강화해서 해양 생물자원의 과학적 연구를 벌인다.

나. 관리방법

(1) “잠정조치수역”

한국과 중국의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양국이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 및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또한 양국은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역 내의 어업 자원 보존을 위하여 조업척수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북방한계선은 서해특정금지구역과 접하는 북위 37도로, 남방한계선은 북위 32도 11분으로 하고 있다. 이 수역은 양국이 공동적으로 개발하여 관리와 보수를 하고 본국의 어선 및 어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2) “과도수역”

<한중어업협정>을 발효 4년이 지나 자동적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편입된 수역이다. 연안국이 배타적인 어로활동과 어족자원의 보호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한중 양국이 각각 자국 어선에 대한 조업허가를 실시하며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국내법 적용 및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

(3) “현행조업유지수역”

“잠정조치수역”의 아래와 위쪽에 있는 서해와 동중국해의 “일부수역”에서는 일단 현행의 어업활동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즉, 지금처럼 조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만, 한국 국내법상 서해 북부에서 실시하는 조업제한조치를 중국 어선이 존중하고, 이에 상응하여 한국도 중국이 동중국해 일부수역에서 실시하는 자원보존조치를 존중하기로 하였다.

다.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중어업공동위원회는 양국이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분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당사국

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 어획할당량 및 기타 구체적인 조업조건에 관한 사항, 조업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해양생물자원의 상태와 보존에 관한 사항, 양국 간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양국 정부에 보고한다.

제4절. 어업협정의 문제점 및 양국에 미친 영향

가. 어업협정의 문제점

<한중어업협정>은 고도의 통솔력을 지닌 어업협정의 문서이다. 기존엔 양국 간의 어업자원공통관리 방면의 법률이 없었다. 각 관할구역 내에 각국의 어업 법률 관련하여 시행하였고, 양국이 협상이 부결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었다.

소극적 영향은 협정은 발효이후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및 기존 수역 유지를 구분하는데 한중어업의 충돌이 더 빈번해지고 매년 중국은 한국에 단속된 불법어획 어선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리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제지하기 위해 한국 해경이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어선의 폭력 저항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나. 어업협정은 양국어업에 미친 영향

(1) 수역 분쟁은 법률에 의거하여 실현한다.

협정은 쟁의 수역은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3가지 구분하고 모든 부분에 대한 특정 권리와 의무 안배가 있다. “한중어업공동위원회”, “어업허가”등은 양국이 희망하는 합법적이며, 순차적 해결, 수역논쟁과 관련된 계약의 초기의 목적을 나타낸다.

협정의 대다수의 조문은 <UN해양법협정>에 부합하며, 국제해양법의 새로운 질서정립 및 시대발전의 추세에 부합함을 나타내었다.

그 외에, 역사상의 국제법 실천 중, 국제법원과 국제해양법정에서 양국 해양권 분쟁 시, 쌍방 간의 상관 협정 역시 가장 중요한 법률근거이다.

예를 들어, 1984년 국제법정에서 미국과 캐나다 간의 메인만 대륙붕 경계선에 관한 논쟁 중, 양국 간 1981년 체결한 특별협정의 이 안전을 심사할 때의 근거 자료 중 하나가 되었다. 1974년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어업 관할권 분쟁에 관한 안전 중, 영국 측에서 제출한 중요증거 역시 아이슬

란드와 1961년에 체결, 교환한 문서였다. 따라서 국제법원은 양국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다.

주시할 만한 것은, <협정>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래로, 중국정부는 <협정>의 보급 및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통계에 의하면, 근 10년간, 농업부 황해·발해구역 공동 각 해외 조업훈련과정을 520여회를 개설하였다. 훈련과정인원은 8만여 명 이었다. 10년 연속 <한중어업협정주의사항>등 홍보자료를 12만여 부를 편집·인쇄하여 무료로 각 어선에 배포하였다. 중국정부의 상관부서는 조업금지시기에 상관 지역 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협정>의 교육 훈련을 이미 제도화 하였다. 주시할 만한 것은, <협정>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래로, 중국정부는 <협정>의 보급 및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통계에 의하면, 근 10년간, 농무부 황해·발해구역 공동 각 해외 조업훈련과정을 520여회를 개설하였다. 훈련과정인원은 8만여 명 이었다. 10년 연속 <한중어업협정주의사항>등 홍보자료를 12만여 부를 편집·인쇄하여 무료로 각 어선에 배포하였다. 중국정부의 상관부서는 조업금지시기에 상관 지역 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협정>의 교육 훈련을 이미 제도화 하였다.

(2) 양국해양개발합작에 대한 심화

<협정>을 체결한 후 분쟁 수역의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전체로 보면 한·중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면서 양국은 해양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광범하게 협력한다. 양국은 작년에 <한중어업협정>의 실시 상황과 다음해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상대국의 입어 안배, 잠정조치수역에 자원관리 조치 및 해양 질서를 유지한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를 하고 협의를 달성하였다.

<협정>은 발효된 10년간에 한중 과도수역에서 연합검사는 14회, 한중 공무원을 서로 교환해서 승선 집행은 5회, 한중 집행선 상호방문 1회와 집행 공무원 대표단 상호방문 활동은 여러 번이다. 황·발해 어정국(漁政局)은 한국 서해 지방 해양경찰청과 <합작협의>를 체결한다.⁶⁾

양국 어업자원의 우세 방면으로 분석하면 중국 노동력자원이 풍부하고 초급 수산물 가공 위주로 가공수준이 높다. 그러나 한국의 어업과학기술

6) 中國新聞網：《中韓漁業協定》平穩順利實施十年，2011.4.9

수준이 총체적으로 중국보다 높다. 수산품은 심층 가공 위주하고 원양조업의 역사가 오래돼서 경험이 많다. 게다가 한국 측의 어장은 중국 측 어장보다 어업자원이 풍부하다.

근년 간, 중국정부는 해양경제에 관심과 투입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기초 하에 양국은 잠정조치 수역에서 협력을 하면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는 한·중 양국의 협력 전망도 수산영역을 광산물이나 에너지를 개발, 선박과학, 임공 섬 건설 등 신흥 분야로 점점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3) 지속적 발전의 촉진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보호와 합리적인 사용”은 <협정>총칙에서 확정된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고 이로 한·중 양국이 “지속적인 발전”인 시대주제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고 “한중어업 지속적 발전포럼”은 이미 여러 번 개최한 적이 있었다. <협정>의 제도를 제정할 때 앞서 열거했던 “액세스피싱 허가”에 따라 어업자원지속적발전을 실현하고 어선수량과 어획할당량에 대한 제한으로 지역 내 어업자원을 양호하도록 한다. 중국정부 경우 과도어획이 어업자원에 대한 훼손성 피해로 1999년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금어기제도를 추진하고 <협정>의 효력이 발생 후 금어기제도와 <협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금어기내에 대대적으로 <협정>보급교육을 진행하고 액세스피싱 허가증을 발급받은 어선선장한테도 교육을 하도록 한다. 훼손성 어획을 피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어업에 관한 법 집행 강도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업계규칙을 만들고 현재는 이미 ‘절호망(絶戸网)’ ‘미혼진(迷魂陣)’등 그물을 없애버리려는 <해양어획관련 최소그물사이즈제도와 사용 금지된 어구목록>을 출시하였다. 수년간의 노력을 거쳐 동해, 황해 쪽의 어업자원은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성장주기가 3,4년인 야생 큰 조기의 생산량도 회생되기 시작하며 도다리 등 희귀한 어종도 동해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외로 한국의 원양어업 및 선박과학영역을 시작한 단계가 중국보다 앞서고 이미 세계선진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중국의 어선들은 디자인상 낙후하고 기름소모도 크고 오염이 엄중하며 그물이 과도하게 거친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2013년 12월 19일 절강주산에서 개최한 “2013중국어선

및 장비기술미팅”에서 어떤 전문가는 “중국 원양어선은 기름소모가 크고 냉장, 급속냉동능력이 부족, 항속력이 부족, 통신안내와 어류탐색장비가 빈약 등 문제점들이 존재되고 특히 단일갑판의 디자인이 유럽연맹이 수산물 위생검역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대다수가 탈락운명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중국지금은 106.9만 척 어선이 있고 69.5만 척 발동선중, 해양어선은 28만 척밖에 안되고 그중 12m이상의 어선은 68%를 차지하고 목제어선이 85%를 초과하였다. 또한 선령이 5년 이상의 어선이 90%이고, 10년 이상의 어선이 40%를 차지하여 어선의 노화문제가 아주 심각하였다.”⁷⁾ 한중양국은 다단계의 회의 및 포럼에서 선박과학합작개발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였고 성실하고 실무적인 태도에 의거하여 양측의 큰 합작공간이 있다.

기술은 낙후하고 기름소모량이 커서 오염심각하고 그물이 조방한 문제가 있다.

(4) 소극영향, 갈등을 격화

한·중 어업분쟁의 직접원인과 표면원인은 근본적으로 1개만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어선이 <협정>의 “어업허가”를 위반해서 한국 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다.

먼저, <협정>의 구역의 구분에 의해 2005년 과도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하고 중국입어 허가 선박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게다가 중국 근해어장이 과도어획으로 인해 어업자원이 감소하게 되었고 중국 어민들이 불법적으로 한국 측 수역에서 조업한다. 또한, 한국 해경이 엄격히 집행인하여 충돌이 피할 수 없다.

둘째, 중국어선의 설비가 낙후하고 GPS과학기술이 낮아서 항상 GPS 정확성을 잃고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셋째, <협정>의 “어업허가”는 중국 어선에 엄격한 수량 제한뿐만 아니라 고액 “어업허가증” 수수료도 불법어업의 원인이 되었다. 중국 어민들이 모험하게 무허가로 조업하여 처벌당하면 수수료보다 벌금이 더 낮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어선을 묶어서 단체로 불법조업하고 한국해경이 잡혀도 벌금을 평균적으로 부담하면 정식번호판을 신청한 것 보다 싸다.

7) <http://www.chinashipnews.com.cn/show.php?contentid=6415>

예를 들어 2011년 10월의 사건 중에 압수된 3척 중국어선은 29개 가정으로 모이는 단체이다. 집마다 4만 위안을 맞추면 어선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한국방면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경 집법이 엄청 엄격하고 무기를 휴대 할 수 있게 되자 갈등 격화가 점점 더 심해지다.

제Ⅲ장 한국과 중국의 허가어업 관리제도의 비교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되었고 사회경제와 인민들의 소비수준 향상에 따라 식품 중에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져 수산물에 대한 수요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어선 장비와 기술, 어획도구 등 21세기에 아주 큰 발전이 있었다. 사람들이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어업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선박들이 어업조합에 가입하여 어업자원의 개발범위는 점차 커지고 해양에서 포획하는 어획량 역시 점차 많아짐에 따라 해양자원과 생태계에도 큰 위협이 되었다. 생물학의 최대 지속가능한 량을 넘으면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어업자원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중시를 불러일으켜 원래의 어업자원에 대한 임의개발과 이용을 변경하여 제한적 이용으로 바꾸었다.

오늘의 세계는 각 나라에서는 각종 대책으로 자원개발적용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 어업의 직접적인 관리가 2가지 방면으로 구분된다. 1가지는 어획능력과 어획량에 대한 제어함, 다른 1가지는 한도액 제도와 할당제도이다.

제1절 한·중 어업허가의 제도적 의의와 성격

가. 어업허가의 의의

어업허가는 국가 행정기관이나 단체는 공동수역에서 조업하거나 양식하는 신청이하여 법률이나 규정을 따라 실시의 허가 및 관리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업자원에 대한 이용과 개발, 특히 상업 개발은 반드시 권리기관

에 발행한 허가를 받아야 입어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국가는 어업자
원과 해양 생태에 대한 제정한 규칙과 구체적 안배를 준수해야 한다. 구
체적으로 어획허가의 주체 어종, 어선규모 및 수량, 어구어법, 조업구역
및 시간, 어획 할당량 등에 규정과 제한을 포함한다.

나. 어업허가제도의 성격

어업어획은 정기 어선, 어구, 노동력 등 생산요소를 투입을 통해 일정한
자원 량이 있는 어장에 수산품을 어획한 경제활동이다. 어업어획행정허가
는 어업행정주관부서 및 어정 어항 감독관리 부서는 어획강도, 어업자원
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취한 중요한 행정관리조치이다.

정부는 어업허가를 받은 단체 혹은 개인한테 어업허가증을 발급하고 각
나라에서 해당 법률을 통해 어업허가증 획득에 대한 규정을 하였다. 어업
허가증의 규정 및 해당 법률이 어업질서가 규범화, 제도화, 자연자원보호,
어업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 목적으로 도달하게 한다. 어업허가증의 발급
은 상황심사의 과정이고 어업생산에 대한 관리의 근거이다. 원양어획에서
항상 여러 종류의 이익충돌이 생기고 어업허가증은 어업생산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 어업생산자의 이익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제2절 한국과 중국의 어업허가제도의 비교

가. 한국 어업허가제도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무동력어선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
어업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10년 4월에 발효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허가 대상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과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연
해어업,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의 신청대상은 어선이다.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대상은 시설이다. 또한 구획어업의 일부분의 신청대
상은 어선이고 나머지 부분의 대상은 어구이다.

(2) 양도 및 매매

<수산업법> 제44조의 인해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유효기간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
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산자원의 보
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신청자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허가신청서, 양
륙항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도시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 군수. 그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
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연안어업 허가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
는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
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 구역은 같은 것으로 본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
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그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 수역에 위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게다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
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

선박등기부를 필요로 한다.

제 7조에 따라 신청인이나 법인의 이름과 국적, 어업의 종류, 어선의 소유 등 보유형태, 톤수와 마력 등을 다 협의요청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어업 경영실적과 어업기술의 보유현황이 기재되어야 한다.

(5) 허가증의 발급 수량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 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허가증

전자어업허가증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종이로 발급하는 어업허가증이 보관하기 쉽지 않고 훼손이나 위·변조 우려가 높아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식 카드로 만들어 시범 운영기로 한 어업허가증이다. 휴대하기 편하고 장기보존이 가능한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선정보와 기존의 허가사항을 비롯해 선박검사 정보, 조업실적 등 어업관련 정보가 다양하게 담기할 수 있다. 2012년부터 발급을 시작하였다.⁸⁾

(7) 할당어획량

TAC(Total Allowable Cath: 총 허용어획량)이란 <수산자원보호법>에 따라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하며, 수산자원보호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제도로써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관리장치이며 국가 간 공동 이용자원의 합리적 관리 수단의 필요성에 의한 UN해양법 협약의무 이행사항입니다. TAC어종별 어획량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어업자원 보호 및 수산정보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8) 위키백과

(단위: 톤)

어종	총 허용 어획량		
	2014년	2015년	2016년
개조개	2,100,000	2,000,000	1,800,000
참홍어	197,000	220,000	180,000
꽃개	14,600,000	10,900,000	6,000,000
소라	1,415,000	1,429,000	1,642,000
도루묵	4,880,000	5,150,000	4,329,000
전갱이	18,000,000	16,600,000	16,600,000
키조개	8,455,000	6,465,000	5,332,000
대게	1,570,000	1,583,000	1,194,000
오징어	191,000,000	186,000,000	141,750,000
고등어	135,000,000	122,000,000	122,000,000
붉은 대게	38,000,000	40,000,000	38,000,000

자료: 어업자원포털

<표3-1> TAC 제도하의 한국 총 허용어획량

나. 중국 어업허가제도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가 어획업에 대하여 어획 허가 제도를 실행한다.

해양저인망, 위망작업 및 중국과 제약협정 맺은 어업구역에서 어업활동 시 국무원어업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는 현급 (縣級)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어업행정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반드시 어업선박검사증, 어업선박등록증, 포획허가증 이 세 가지를 보유한 선박만이 어업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8조에 의하면 외국인, 외국어선이 중국관할 수역지구에 진입 시 반드시 국무원유관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업어획허가관리규정> 제44조는 중국어선이 다른 나라 관할 수역에서 작업 하려면 반드시 농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17조는 어업어획허가증은 해양어획허가증, 공해어업어획허가증, 내수어업어획허가증, 특별어업어획허가증, 임시어업어획허가증, 외국 선박 어획허가증, 포획 포조선 허가증이 총 7가지 종류가 있다고 규정한다.

(1) 허가 대상

<해양어획허가관리규정>제36조에 의하면, 어업어획허가증 신청인은 선주여야 하며, 신청인은 허가를 얻은 후 증서소유자가 되며, 증서소유자는 그 어업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 역시 지게 된다.

(2) 양도, 매매

<어업법> 제 23조에서는 어획허가증은 매매 및 임대, 양도가 불가능하며, 수정,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어업포획허가증관리규정> 제18조에서는 영업경영자 변경 시, 원래 발급되었던 허가증은 폐기하여야 하며, 본래의 방법으로 새롭게 어획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시어획허가증은 변경사항을 처리하지 않는다.

<어업어획허가관리법> 제 28조는 해양어획선박 매매 및 동력 기관의 마력과 사이즈는 변경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양 어획업 선박그물지표의 자료를 제출하고 선박그물지표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3) 유효기간

<어업어획허가증관리규정>제13조에 의하면, 외해, 근해, 내수어획허가증의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 1회 심사를 실시한다. 전항(특허) 어획허가증은 심사통과 시기에 맞춰 사용하며 임시 포획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이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땐 각 성, 지자체, 직할시의 주관부서의 심사통과에 의하지만 연속으로 기간 연장 시 3년을 넘지 못한다.

(4) 신청자료

- ① 어업어획허가증 신청서
- ② 기업법인의 사업등록증 혹은 개인 호적 증명서 사본
- ③ 어업선박등록(국적) 증서원본 및 사본
- ④ 어구와 포획방법이 국가 규정에 부합한지 설명하는 자료

(5) 허가증 발급 수량

중국은 “어획업 선박그물제어지표”를 통하여 어업허가증의 수를 조절한다.

<어업어획허가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면, 농업부는 국무원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후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에게 해양어획업 “그물도구제어지표”를 발송한다. 지방 각급 어업행정주관부서는 자행정구역의 어획선의 수량, 마력을 제어하며, 국가의 발송한 “그물제어지표”를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정부가 직접정하고 농업부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내수어획업의 “그물도구제어지표”와 관리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정부에서 규정하며, 전문원양어선; 해양대형 저인망어선, 위망어선; 성, 자치구, 직할시간의 매매 어선; 특별한 필요로 국가의 “그물도구지표”를 초과한 어선; 기타 법률에 농업부의 심사를 받아야 할 어선은 성급(省級)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부는 자료를 받은 후 20일내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 원양어선의 지표는 농업부에 통일 관리해야 한다.

“어선그물지표”는 어획신청인은 어획작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받아야 할 행정 허가이다. 어업주관부서는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는 각지 어획할당량에 따라 어업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한 중요한 수단이고 어획신청인은 최종 어업어획허가증을 성공적으로 받기 전에 중요한 수속이다.

(6) 허가증

허가증에 작업종류, 작업방식, 어구명칭, 작업장소, 작업시한, 그물수량 및 규격, 어획품종을 기재한다.

(7) 할당어획량

<어업자원평가>(Fish stock Assessment)는 어업생물 연구(주로 경제어류), 개체의 동태, 수량변동 등을 연구하는 학과이다. 어업개체군생태학에 속하며, 어업 자원학의 핵심부분이다. 어업개체군대상의 생물학특징을 이해 및 파악하는데 기초를 두며, 일정한 가설조건을 전제로 하여, 수학 모형 설립을 통화하여, 개체군자원량의 특정변동과 규율을 파악하여, 자원개체군의 과거 및 실시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어업법> 제22조에 의하면, 중국은 어획량은 어업자원 성장량보다 낮은 원칙에 따라 어업자원의 총 어획 가능한량을 확정하고 할당제를 실시한

다.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는 어업자원의 조사와 평가활동을 조직하고 책임진다. 어획할당제도에 대해 과학 근거를 제공한다. 중국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기타 관할 수역의 어획할당량이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에서 정하고 국무원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각급 나눠서 전달한다. 어획할당량의 배치는 공평과 공정의 원칙을 보여주고 배치방법과 비치결과를 반드시 공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 주요 차이점

근해 어업허가 제도를 위주로 비교한다.

한국의 법률에 의하면, 근해어업어획을 하려고 하는 자는 어선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법률은 어선 소유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민간 어선 매매나 임대할 때 당사자는 법률 의식을 회박하여 선박거래만 하고 “그물도구지표”, 어획허가증 재신청 및 선박 명의 변경 수속 등을 제때 하지 않고 심지어 수속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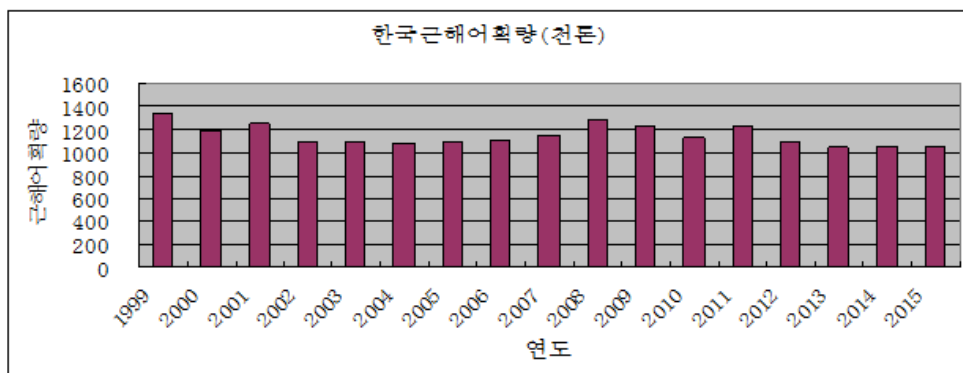
허가증 발급 수량은 한국은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서 허가증 수량을 정한다.

중국의 허가증 수량은 “어획업 그물도구통제지표”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어획업 그물도구통제지표”는 각 지방 정부는 자 구역 수량을 통제한다.

어획할당은 한국이 TAC제도를 사용하고 정확한 수량을 설정할 수 있고 중국은 국무원어업행정기구는 어업자원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해 할당량을 정한다.

제3절 한국과 중국의 연근해어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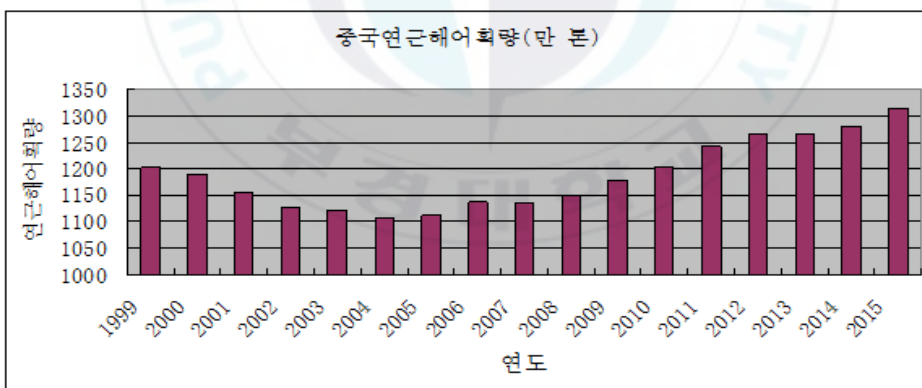
<그림3-1>을 보면 한국 근해어업은 조사기간 1999년~2015년에 따라 1999년 1336.1톤으로 가장 어획량이 많았으며, 그 이후는 감소된 경향을 보였고 연 평균 1149천 톤이다.



(자료: 수산정보포털)

<그림3-1> 1999-2015년 한국 근해어획량

<그림3-2>를 보면 1999년 중국 농업부는 정식으로 해양포획 계획 산량이 “0증장” 목표를 실시한다. 근해어획량은 1999년 은 1203.46만 톤이고 1998년 보다 0.95톤만 증가하여 그 이후는 2010년까지 연근해 어획량이 1203.59만 톤이고 “0증장” 목표를 대체로 실현하였다. 2011년부터 증장하기 시작하고 2015년 연근해어획량이 1314.78만 톤이다.



(자료: 중국어업통계연감)

<그림3-2> 1999-2015년 중국 연근해어획량 추이

제Ⅳ장 한국과 중국 어업분쟁의 성격과 내용

제1절 한국과 중국 어업분쟁의 성격

한·중 해상 어업분쟁은 실질적으로 양국은 해양권 논쟁에 있다. 한국은 황해 관련 지역에 어업법 집행을 강화하는 목적이 어업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분쟁 심화 지역의 법 집행력을 통해 미래 배타적 경제 수역 확정에 영향을 준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어업협정을 무시하여 불법 조업도 미래 양국 배타적 경제 수역의 확정에 영향을 준다.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그리는 것은 쟁의가 존재하고 있다. <UN해양법공약>에 따라 연해 국가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정할 수 있고 배타적 경제 수역내의 모든 생물자원과 비 생물자원의 주권을 가진다. 이 수역에서 주권의 확보하기 위해 승선, 검사, 체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0해리의 기준에 따라 한·중 양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친 부분이 있고 양국 간 해역 폭이 400해리 미만인 곳에서 200해리 표준으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하면 겹친 부분이 나타난다.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건립과 해양 주권 의식을 높이고 양국이 모두 자국의 입장만을 유지하면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제2절 한국과 중국 어업분쟁의 종류 및 현황

한·중 어업분쟁이 오래됐고 한중어업협정의 발효하면서 해양수역을 다시 나누었다. 새로운 어업질서에 양국분쟁이 더 빈발한다. 주로는 중국어선이 협정 관리 수역에서 불법조업 행위를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 불법어획의 종류

불법어획은 주로 세 종류이다. 1) 무허가어획, 즉, 한국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다. 2) 한국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기지고 있지만 어장, 어구 및 어획량의 규정을 위반한다. 3) EEZ수역의 조업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중국어선 조업실태를 살펴보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허가를 받

은 중국어선의 어획량 허위기재, 불법어구 사용 등의 허가 및 제한조건을 위반하는 행위('11년 332척, '12년 330척, '13년 304척, '14년 232척, '15년 448척) 및 무허가 어선('11년 170척, '12년 106척, '13년 149척, '14년 85척, '15년 109척)으로 구분됨.⁹⁾

나. 어선 분쟁규모가 크다

어업 분쟁의 규모가 큰 것은 아래 면에서 표현된다. 2008~2015년 단속된 중국 불법 어선이 3580척 이다. 어업 분쟁 큰 규모의 이유는 주로 불법 작업, 규모 방대인데 이런 불법 작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한국의 처벌 이유는 주로 무허가 진입하고, 경계를 넘어 포획하고 한국의 특정 금지 구역에 작업하고, 진입하고 통보하지 않고, 통보 후 앞당겨 진입하고, 어선 용적도가 없거나 용적도에 신청인의 도장이 없고, 저인망과 고기받이 그물눈이 규정에 맞지 않고, 어획 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규범을 맞지 않게 작성 등이다. ¹⁰⁾

(단위: 척, 백만 원)

구분	단 속 실 적					담보금 징 수
	계	영해침범	무허가	특정금지	제한조건 위반 등	
2015	568	11	109	17	497	26,449
2014	341	24	85	19	213	18,997
2013	487	34	149	13	291	24,417
2012	467	31	106	34	296	17,149
2011	534	32	170	17	315	14,416
2010	370	53	91	30	196	7,816
2009	381	23	86	34	238	5,532
2008	432	12	76	32	312	6,272

9)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2

10) 熊壽, 車斌* <中韓漁業糾紛的原因和對策探析> (上海海洋大學經濟管理學院, 上海 201306)

<표4-2>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현황 (2008년~2015년)

다. 폭력적 충돌이 빈발한다.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중국 어선이 불법 작업한 경우에 어선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벌금을 내야하고 보통 50톤 이하는 3,000만원, 50톤 이상은 5,000만원이다.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류된다. 3,000만~5,000만원의 벌금이 중국 어민에 대해 작은 금액이 아니고 일단 잡히면 거의 가산이 모두 탕진된다. 그래서 한국 해경 조사를 당하면 중국어민은 돌을 던지거나 도끼, 쇠파이프, 낫, 몽둥이 등 도구로 저항하며 어민들의 치열하게 저항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08년 9월 23일에 한국 목포 해양 경찰서 3003호함이 중국불법 어선을 검문 검색할 때 4명 해경과 중국선원이 심각한 충돌을 일어난다. 이때 문에 한국 해경은 새로운 조치를 취한다. 2008년 9월 25일에 강제로 다른 중국어선을 검문 검색할 때 해경 1명은 중국어선을 등선 시도하는데 바다에 빠지고 숨졌다.

그때부터 한국 해양 경찰청은 국내 여론의 압력에 2008년 10월 2일에 한국어선 불법 작업에 대한 타격 강도를 강화했는데 특수 기동대 설립, 함정 배치 증가 등 조치를 취했다. 한국 해경은 장기간 헬기가 탑재된 3000t급 경비함을 배치하고 1000~1500t급의 함정을 증가했다. 동시에 한국 해경은 검사 인원들에게 고압 분사기, 장거리 음파 제어기, 전자 충격총과 비상 구명복, 헬멧 통신기 등을 발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 해경 경찰청은 해경이 중국 어민을 향한 총기 사용을 허락했다. 이로 인해 중한 어업 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추세를 보인다.

라. 조업 조건을 위반

(1) 배타적 경제수역

① 허가어선들은 할당량보다 많이 잡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출입 위치 허위 통보 등의 불법행위

② 다만,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무허가 중국 어선들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한국수역을 침범, 불법조업 시도 목포해역에서 일부 무허가 어선들이 10~20여척 선단으로 집단침범, 쇄창살 철망 등 등선방해물 설치하고 검문검색에 저항 도주.¹¹⁾

(2) 서해 NLL 주변수역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북측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야간이나 기상이 불량한 시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한국 해역으로 넘어와 불법조업 하다가 다시 북측 해역으로 넘어가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2013년 한국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중국어선 487척의 선적항을 보면 요녕성(226척, 46%)과 산둥성(174척, 36%)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두 지역이 한국 수역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이동에 소비되는 유류비 등 각종 소모성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불법조업으로 잡은 어획물을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¹²⁾

제3절 한·중 어업분쟁의 요인

가. 환경적 요인

중국 20세기 70년대 이후 해양 경제의 급속 발전에 따라 연해지역 인구가 급성장하여 해양 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근해생태환경을 파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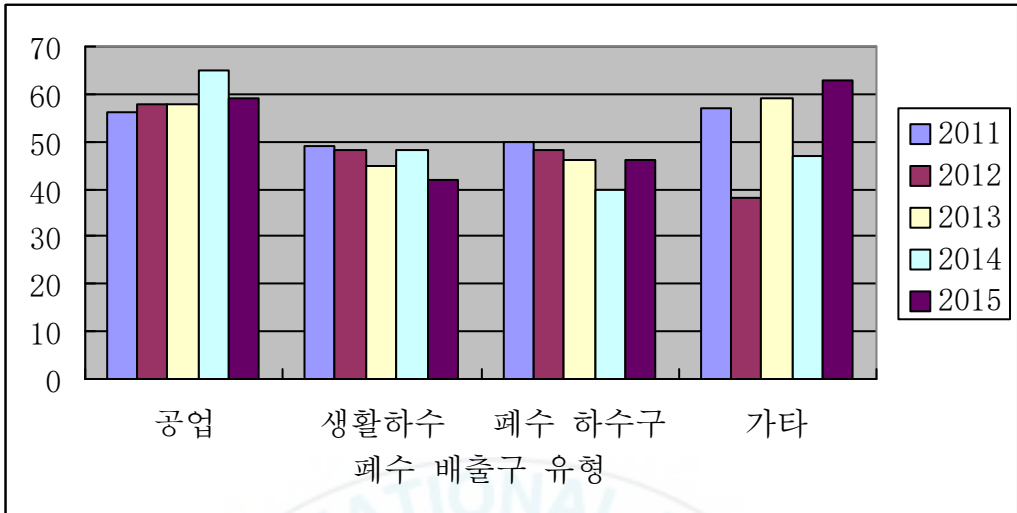
2015년 중국 관할 수역에서 매 계절마다 연4회 해양 수질에 대한 검측을 하였다, 결과는 근해 국부 해역의 환경오염이 여전히 심각하다. 근해 이외의 해역 수질은 양호하다고 밝혔다.¹³⁾

2015년 중국 해양환경 공고에 따라 445개 바다에 오폐수 배출구에 대한 검측을 하였다. 배출구의 유형에 따라 공업과 생활하수의 배출기준 합격 횟수의 비율은 각각 59%, 42%를 차지하고 있다. 폐수 하수도과 다른 하수도의 합격 배출 횟수의 비율은 각각 46%, 63%이었다. 2011년~2015년, 공업 폐수의 배출 비율이 높았으며, 생활폐수 배출 비율은 낮았다.

11) 농림수산식품부, <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안 연구> 2012.5

12) 농림수산식품부, <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안 연구> 2012.5

13) 중국 국가 해양국 <2015년 중국 해양환경 상황 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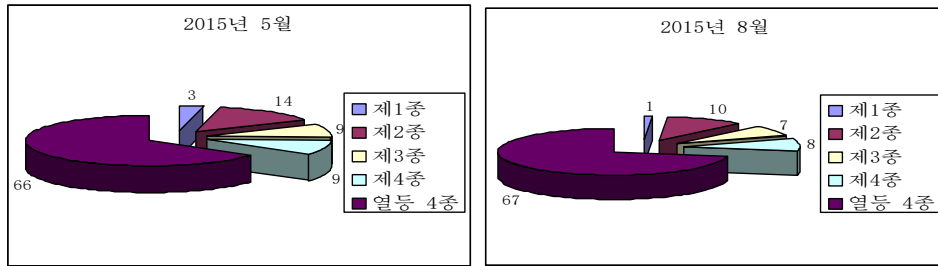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 해양국 해양환경 상황 공보)

**<그림4-1> 2011-2015년 입해 배출구의 유형에 따라
배출기준 합격 횟수의 비율**

중국 <해수수질표준>에 의해 해역의 다른 사용기능과 보호목표에 따라 중국해수수질은 4종류를 나눈다. 제1종은 해양어업수역을 적용하고 해양 자연 보호구역 및 멸종 위기 희귀한 해양 생물 보호구역이다. 제2종은 수 산 양식구역과 해수욕장이고 인체 직접 접촉한 해상 운동 및 오락구역이다. 그리고 인류 먹는 용수와 직접 상관이 있는 공업용수구역이다. 제3종은 일반 공업용수구역, 해변 풍경 관광지이다. 제4종은 해양항구수역 및 해양 개발 조업구역을 적용한다. 국가 해수수질표준보다 열등한 수질은 열등 4종수(劣四類水)이다.

2015년 5월과 8월에 각각 101개와 93개 입해폐수배출구에 대해 수질검 측을 진행하였다. 근해수역수질이 심각한 오염된 배출구는 5월과 8월에 각각 66개와 67개 있다. 82%의 폐수 배출구 근접에 수질이 해당 해양기 능구의 수질요구를 충족하지 않는다.



(자료: 자료: 중국 국가 해양국 <2015년 해양환경 상황 공보>)

<그림4-2> 2015년 5월과 8월에 입해 배출구에 근처 수역 수질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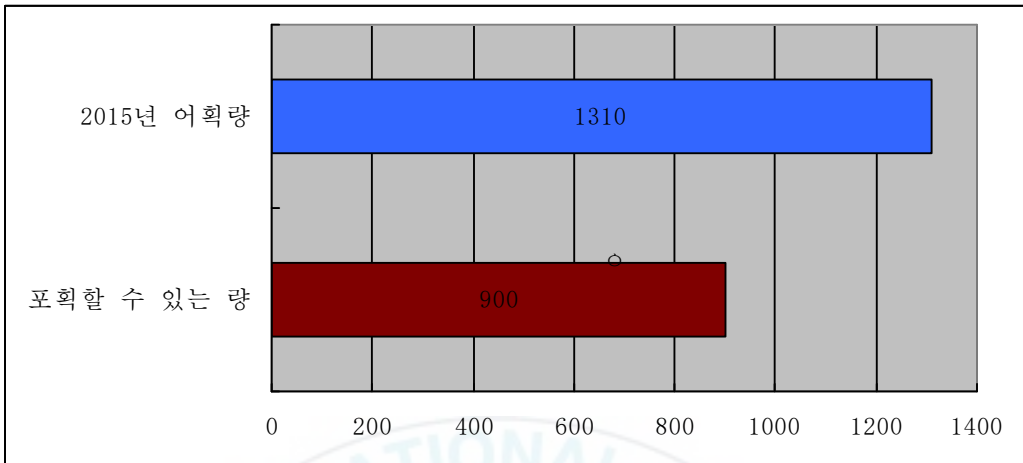
2011년~2015년에 검측결과에 따르면 각 수역 배출구 근처의 해역수질 등급은 78%이상이 제4종과 열등 4종(劣四類水)이다. 근처 해수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수중에 주요 오염 요소는 무기 질소와 활성 인산염이다.

나. 수산자원 감소

1950년 이전에, 중국원양포획은 목선(木船)으로 고기잡이철에 국한되어 주로 생산 되었다. 주요어장은 연안지역이었고, 대다수의 어업자원은 이용하기에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건국이후, 중국 연해의 포획능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점차 목선에서 엔진형 배로 발달하였다. 80년대초부터 시작하여, 어업경영체제의 변화에 따라 포획능력은 더욱 증가하였고, 어선의 크기 역시 점점 커졌고, 포획 작업하는 해역 역시 연안에서, 근해로, 또 외국해역으로 점차 확장되었다. 과도한 개발로 인해 올해 3월, 중국 농업부 부장 한장부(韓長賦)가 중국관할한 해역 어업자원의 어획량은 대략 800만 톤에서 900만 톤에 달하며, 실제적인 연간 어획량은 1300만 톤 남짓이다. 과도한 포획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근해 어류산란지는 큰 위협에 처했고, 해양어업자원은 심각하게 쇠퇴하게 되었다. “동해에 고기가 없다”는 이미 사실이 되었고, 다른 해역들 역시 포획할 고기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⁴⁾

14) : <http://news.qq.com/cross/20161114/V59I7L2P.html#0>

[단위: 만 톤]



<그림4-3> 중국 4대 해역의 어업자원

중국은 현재의 원양포획방식과 구조역시 굉장히 불합리하다. 포획생산량은 대부분 저인망, 위망 등의 포획방식이다. 이러한 포획방법은 문제가 존재하고 중국근해의 대규모적인 과용은 어업자원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예를 들어, 중국내의 과도하게 촘촘한 그물의 사용은 저서생태계 파괴를 가져왔고, 해양생물자원 역시 파괴하였다.

불법 포획은 자원과 생태계의 파괴하였고, 농업부는 어업도구의 그물망의 그물눈 최소규모를 규정하였지만, 연해지역은 여전히 대량으로 과도하게 작은 그물눈의 그물을 사용하여 “밀목망(密目网)”, “절호망(絶戸网)”, “레이더망(雷達网)” 등 큰 파괴력을 지닌 어구가 범람하고 해양어업자원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생태계 구조는 새로이 성장한 생물군락 혹은 먹이사슬에 의해 더 아래 단계의 생물로 대체되었고, 어업자원의 평균영양 수준은 끊임이 않고 떨어져, 어획물은 점점 저 연령과 소형화, 저 가치화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자원의 기초는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근해 과도어획의 원인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사람들의 추구

근해지역 사람들의 높은 생활수준 추구하고 내륙사람들은 식품에 대한 높은

은 관심으로 인해 몇 년에 역사 최고수준이 달한다. 대다수 어획 종사자는 교육 수준이 낮은 어민이라서 어획할 때 대량으로 포획만 생각하고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과도어획은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해양어획활동은 높은 수익이 있고 일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수많은 농민공(農民工)은 건설업을 포기하고 어업을 전업하여 근해수역은 압력을 받게 되었다.

(2) 발동선의 수량 급증, 어획 인원수 급증

지금 중국 기계제조업은 발전하고 각종 첨단기술 전자 통신설비의 사용으로 인해 고성능 및 성능을 모두 갖추는 어선이 최근 몇 년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동시에 중·소형 어선의 수량은 예전과 비교해서 뚜렷한 증가하였다. 21세기초반 중 어선수량이 1980년대보다 거의 2배정도 증가하였다. 지금 어획 종사자수량도 대폭으로 증가하고 금세기초기까지 해상 어획 종사자의 인구 수량이 100만 명이상으로 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3) 근해불법어획의 빈발

근연에 어업생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므로 금어기, 금어구와 오염을 방지 등 보호제도의 실시는 일정한 효과를 보지만 집행 인원이 양호한 집행의식이 부족하고 감독부서도 감독업무를 제대로 못한다. 금어기는 많은 대형어선이 어획을 정지하지만 어민들이 여전히 소형 불법 기동어선이나 대나무 뗏목으로 어획활동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90년대 말에 남해구역은 무허가 어선이 1만 여척을 단속하였다. 그리고 어떤 어민들이 포획하기 위해 물에 독약을 투입하거나 폭약을 사용해서 약탈식 어업을 하였다.¹⁵⁾

해양생태학자 당자생(唐啓升)원사의 소개에 따라 발해의 생물종류가 대폭감소하고 있고 어류는 1983년의 63종부터 2004년의 30종으로 감소하였고 생물 생식 군체 구조는 소형화, 저령화로 나타난다. 근연에, 어민 어획한 많은 참조기, 갈치는 1살만 이고 산란 군체의 저령화 때문에 산란 수

15) 于先波 張吉棟 邵利軍 <關於我國近海漁業資源捕撈過度的情況與對策> 威海市文登區海洋與漁業執法大隊, D922.65

량이 줄이고 자원 보충량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 발해의 어업자원이 고갈을 일으킨다.¹⁶⁾

지금, 황해와 발해의 대구, 참조기, 수조기, 삼치 등 어획이 금지되어 있고 참돔과 갈치는 발해에서 거의 사라지고 기타 전통 우질 품종의 어기도 사라진다. 야생 수조기, 참조기는 멸종 위기에 처한다.¹⁷⁾ 이 따라 1999년 중국정부는 근해어획량이 “0증장”의 정책을 제정하고 해양어획업은 약탈식 증장을 개혁하였다.

다. 이어도(쑤옌자오)의 영유권 분쟁

이어도의 영유권의 분쟁에 대한 영향을 일으킨다. 이어도는 동 중국해 북부 동경125도, 북위32도에 위치하고 <UN해양법공약>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규정에 따라 이어도는 한·중 겹친 해역 내에 위치하므로 양국은 잠정 조치수역에서 위치다. 중국은 “쑤옌자오(蘇岩礁/蘇岩礁)”라고 칭한다.

한국측 주장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영해로부터 일반적으로 200해리 지점이나, 두 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삼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 중간선 원칙 상 이어도 부근해역은 한국 관할지역이라는 주장이다.¹⁸⁾

또한 중국측 입장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경계 획정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¹⁹⁾

<UN해양법공약>은 양국은 만약 겹친 경제 수역이 있으면 협상으로 해결해야 된다. 국제법상은 “무주지”를 선점유척이 있다. 즉 국가는 무주지(无主地)를 점유할 수 있고 무주지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무주지”는 그 당시에 어느 나라도 속하지 않는다. 선점은 한 국가는 그 당시에 어느

16) 陈新洲, 丁锡国. 渤海日趋“荒漠化”渔业资源衰竭加剧 [N]. 经济参考报, 2009-05-06 (A2)

17) 杨瑾《大力发展远洋捕捞业 振兴海洋经济》

18)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2006년 9월 20일). “<중국의 이어도 시비는 국제법적으로 부당하다.>”. 월간조선

19)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 (국제법) (2005년 4월 07일). “<(내 생각은...) 중국, 해양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중앙일보, C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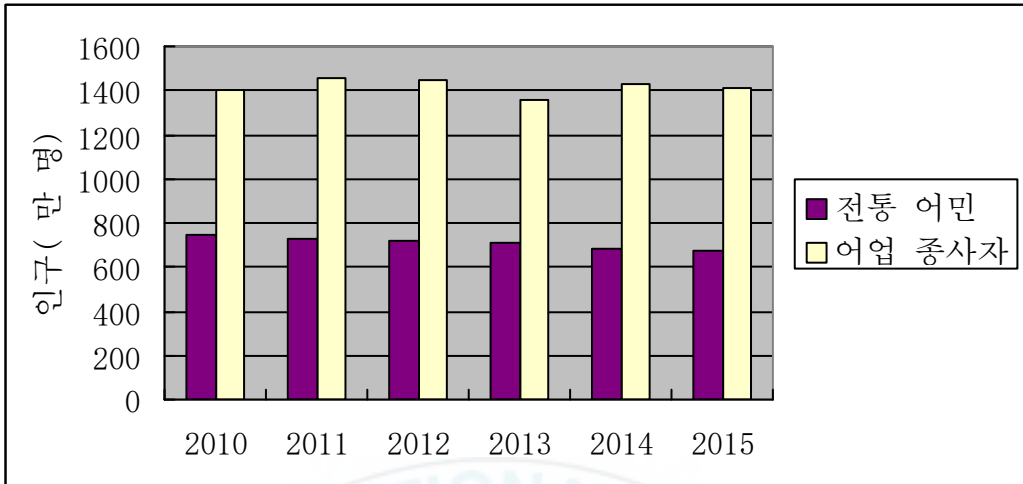
국가도 속하지 않는 토지의 소유권을 의식적으로 점취행위는 영토를 얻은 방식이다. 그런데 이어도는 수중 암초를 속하고 섬이 속하지 않아서 이어도를 점령에 대한 쟁의를 일으켜서 한·중양국의 해역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는다. 한·중의 “이어도의 전쟁”은 근처해역에 어업활동을 영향을 한다. 양국은 다 상대국의 이어도에 대한 주장을 승인하지 않아서 이 해역은 근연간의 어업분쟁이 빈발 직역을 되었다.

라. 어업 종사자의 변화

근연에 어민과 농민의 1인당 수입에 비교하면 어민 1인당 수입이 농민보다 높고 시간 지나면서 점점 차이가 커지고 있다. 2010년 어민 1인당 수입은 8,963위안, 2011년은 10,012위안, 2012년은 11,256위안, 2013년은 13,038.77위안, 2014년 어민 1인당 수입은 14,26.26위안, 2015년은 15,594.83위안이다.

중국 원양어업의 발전하면서 1985년~2008년 어민 수입이 상승 추세이었고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한다. 2010년에 전통 어민수는 747.04만 명이고 어업 종사자는 1399.21만 명, 2011년에 전통 어민수는 730.93만 명이고 어업 종사자는 1458.50만 명, 2012년에 전통 어민수는 723.58만 명이고 어업 종사자는 1444.05만 명, 2013년에 전통어민은 712.6만 명이고 어업종사자는 1353.34만 명, 2014년에 전통 어민수는 686.4만 명이고 어업종사자는 1429.02만 명이다. 2015년에 전통어민인구는 678.46만 명이고 어업종사자는 1414.85만 명이다. 20)

20) 자료: 중국 어업 연감



<그림 4-4> 2010-2015년 중국 어업인구

중국 어업 인구 중에 전통어민 외에 외래인구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절강성 해양어획 종업자중에 2005년~2008년에 신규로써 비 해양어획어민은 2280명이고 전통어획어민은 5951명을 감소한다.

이 외래 인구는 주요 내륙성의 농민공이다. 나이는 30~50살이고 생활 부담이 크고 농경적지가 적거나 징용을 당하였다. 그리고 이 외래 종사자들은 보편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전문 노동기능을 부족하고 해양어획, 해양법에 대한 알지 못하다는 불법어획과 폭력 저항의 원이이다.

원양어업의 급속 발전이 노동력이 공급 부족하게 되고 원양어업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먼저, 노동력이 날로 부족하고 급여비용을 대폭 상승하고 산업의 전체적인 이익을 영향을 준다. 다음, 안정한 생산 집단을 형성하기 어려워 건강한 발전이 힘들다. 마지막, 중국 국내에 특히 젊은 노동력이 원양어업생산으로 참가하는 인원수이 해마다 줄어들고 어떤 원양 어구는 40대 이하의 어민이 찾지도 못하고 외성과 외국 노동자만 의지해야 한다. 교양 있고 기술 알고 경양할 수 있는 어민을 배양한 것은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 외에, 어민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바로 취직 및 재취업 범위가 너무 좁고 자금부족한 문제이다. 어민들이 전산전업(轉產轉業)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여러 어민들이 한국관할 수역에서 어획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불법어업을 한다. 그래

서 어업분쟁의 기획이 증가한다.

마. 어업 회사의 임금체계

중국은 원양어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중앙과 지방 정부는 원양어업의 육성에 힘껏 협조한다. 원양 기업의 강대하기 위해 더 많이 선원을 구해야 한다. 전통 어민 외에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한데 원양어획은 비교적으로 위험하고 근무 시간 길로 인해 선원을 구함이 어렵다. 이 따라 원양기업들이 다 좀 우울한 대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위해 룡청 홍순주식회사는 한 선창에 6명씩 살고 생활필수품을 다 제공한다. 선원들이 내륙에서 아르바이트보다 돈도 많이 벌고 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1>

산동성 중노 원양어업 주식유한회사의 선원 모집 광고에 다음 내용을 쓴다.

회사는 지금 새로 선박이 증가되어 보통 선원이 500여 명만 모집하면 된다. (그 외, 선장, 1등 항해사 각 3명, 기관사, 조리사 각 7명을 모집한다.)

모집 조건: 나이는 만 18~53세이고 호적 무제한, 중학교 이상 학력, 신체 건강, 전염병 무, 인터넷에 올라온 범죄자가 아니고,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고,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야 한다.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리 센터에 와 지원하면 된다. 선원의 주요 업무는 갑판에서 물고기를 선별하고 박스에 담고 저인망을 정리하는 거다.

대우: 1.연봉 8-20만+보너스+인센티브+이익 배당. 신입 직원 월급 5000~7000위안, 두 달 후 6000-15000위안/월, 인센티브를 별도, 연봉 8~40만 위안(1년에 한 번 계약), 계약 만기 시 재계약 가능하고 원양 어업 설날에 회사에서 고향 왕복 차비를 청구해 줄 수 있다.

선원의 각종 증명서를 만드는 수수료가 총 8500위안인데 선원은 1800위안만 부담하고 기타 비용은 전부 회사에서 지불한다. (지원자는 직접 모집하는 단위에 위탁해 선박 예약 보증금 1000위안을 먼저 내고 배에 오르탈 때 800위안을 내면 바로 배에 오르타하고 배에 못 오르타면 모든 비용을 돌려준다.

선원이 매번 바다로 나가면 5~20에 한 번씩 항구에 정박한다. 회사로 돌아온 직원은 유급휴가 3~4일이 있고 똑같이 숙식 제공한다. 회사에서는 선원에게 입사를 위한 각종 수속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각종 보험은 국가에서 규정한 노동 보험 복지 대우 등을 누릴 수 있다.

<사례2>

원양기업은 선원의 열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보너스 제도를 재취한다. 예를 들어 위해 모 원양 기업은 단 선(單船)의 생산액 10%를 초과하면 이 어선의 생산액 초과한 부분은 10%를 공제하고 생산액 20%를 초과하면 어선의 생산액 초과한 부분은 20%를 공제하고 생산액 30%를 초과하면 이 어선의 생산액 초과한 부분은 30~40%를 공제한다. 보너스는 선장 30%, 기관장 13%, 1등 항해사 10%, 1등 관리사(大管)7%, 2등 관리사(二管)7%, 냉동장(冷凍長)7%, 선원3%에 따라 배분한다.

매년 신규 선원이 선원 총인원 수의 반을 차지한다. 그 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그전에는 공사장 노동자, 택시 기사, 빗진 자영업자 등이다. 높은 임금을 보고 오지만 바다에서 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사 등은 비교적 고정되었지만 그들은 어업 회사에 공훈을 한 직원들이다. 그러나 보통 선원들은 유동성이 아주 크다.

주산시 푸퉁 원양어업총공사는 보통 선원의 급여를 어선 생산량에 따라 정하고 기본 급여가 없어서 모집이 비교적 어렵다. 그 외에 새로 모집한 노동자들은 노동 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지고 경험이 없는 신규 선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절강해양학원 관리학원 행정관리학과 교수 耿相魁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 국내 원양기업이 “모집난”의 원이중 하나는 대부분 사람은 해양 어획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서부 대 개발과 중부의 굴기전략의 실시는 노동력의 진로를 분산하게 되었다.

많은 기업은 과다한 사람을 유지 원가와 위험을 부담하기 싫어하기에 “주문을 받고 선원을 모집하고 주문량을 채우면 해고”하는 임시적인 인원 사용 모드를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기업의 공인은 매년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나간다. 주문이 오면 사방에 사람을 털면서 “노동자 고용난”을 큰 소리로 외친다. 국내 원양 어획선의 기계화 수송, 기계화 자동 가공의 응용 정도가 비교적 낮아서 인력 운반과 작업을 위주로 알고 있다.

바. 중국 어업 관리제도의 문제

(1) 중국은 불법 어획의 과정에 따라 여러 불법어획을 조업하는 어선이 증명서나 수속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여기의 증명서는 <어업선박검사증명서>, <어업선박등록증명서>, <어업허가증>, <어업선박국적증명서>이다. 중국은 상술한 증명서는 각각 부서에 귀속되고 어민들이 최대한 빨리 어획조업을 시작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수속이 모자란 상태에서 몸을 던져 모험한다. 이는 중국 선박 감독제도의 불완전과 증명서를 발급한 과정이 복잡하다는 폐단을 폭로한다.²¹⁾

(2) 중국정부부서의 감독의 부족하다는 중국과 연해 인접국의 분쟁 빈발한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중국의 해양관리 현황은 해상 법률 집행기관은 국경 수비, 해경, 해감, 해사, 어정, 세관 등 다섯 개 부서로 분포된다. 각자 스스로 체계화되고 불법해위를 즉시 발견하기 어렵고 해상에 권익 수호하면 어정의 힘만으로 해양 권익 분쟁에 대한 처리하기 역지스럽다.

다음, 중국 지금 가지고 있는 어업관리 체계는 폐단을 존재한다. <어업법>에 따라 국가는 어업의 관리에 대한 “통일지도, 급별관리”(統一領導、分級管理)를 실시하고 있다.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어업업무를 주관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에 어업업무만 주관한다. “통일 지도, 급별 관리”의 원칙은 중국 국정을 적용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상의 중앙어업관리기구는 각 지방어업생산의 관리와 감독이 약화된다. 지방 행정기구는 “선 반영, 후 규범; 중 발전, 경 관리”(先繁榮,后規範:重發展,輕管理)의 상황이 심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 금어기 실시할 때 일부분 불법어선을 대상으로 경계선을 넘어서 조업하는 상황에서 주관어업부서는 앉아서 보고만 있다. 그 다음, 중국 해안선이 길어서 어민들이 조업 구역이 넓고 어민수량이 많다. 근 10년 간, 중국 해양어획 종사자는 늘 3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수준이 다르며 어정설비는 낙후한다. 그리고 어업에 비교적으로 말하면 어정관리의 힘이 약하다. 신 해양제도의 탄생에 따라 여러 지역에 어민의 생존 문제를 해

21) 戴瑛, 淺議IUU捕撈及我國規制, 《河北漁業》, 2016년 제7기 (총 제271기)

결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에 어민의 불법어획을 일으킨다.

제4절 한국과 중국 어업분쟁의 추세와 전망

한·중 해상에 어민 분쟁과 충돌은 신시기에 양국 관계 중 가장 급히 해결해야 한 문제이다. 양국 정부는 다 각자 노력하게 협조와 관리하고 있다. 한·중 어업분쟁의 합리적 해결은 한·중 관계의 건강발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유익한다. 한·중간의 어업분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근원부터 어업분쟁 및 충돌 사건을 억제할지 사건발생이후 급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양국의 공동적으로 대처할 문제이다. 지금 한·중 양국은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지만 협정은 급급하게 확정할 회색지역(灰色地帶)이 많이 존재하고 어민들이 어획 경계선에 대한 인식이 애매모호하게 된다. “상호 이익과 혜택을 주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한국과 장기 안정한 국제 어업협조를 건립한다. 중국 어업기술에 발전 따라 어업생산 능력을 높이고 점점 더 많은 어민들이 원양어획을 종사하기 시작하고 중국어민과 타국 어민의 접근 기회가 증가하고 상관 부서와 타국 관련된 협정 체결을 객관적으로 요구해서 각국 어민의 이익을 확보한다.

제 V 장 한국과 중국 어업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제1절 한국과 중국 상호입어의 현황

가.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한국 입어 현황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 입어 허가된 조업 유형은 저인망 류, 선망, 자망 류, 안강망, 통발 류, 낚시어구 류, 일반어획물운반선이다.

2001~2002년에 협의 입어어선척수는 1,402척이고 할당량이 9만 톤이다. 2003~2004년에 협의 입어어선척수는 1,402척이고 어획할당량이 모두 6만 톤이다.

2005~2015년에 협의 입어어선척수는 모두 1,600척이고 실제 입어어선척수는 해마다 감소한다. 협의 할당량이 6.8만 톤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6만 톤을 정하였다.

구 분	01~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16년
어 선 척 수	1,402	1,402	1,402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어획량(t)	90,000	60,000	60,000	68,000	68,000	68,000	68,000	68,000	66,000	64,000	62,000	60,000

(자료:해양수산부)

<표5-1> 01년 이후 한국어선 입어 규모

나.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국어선의 입어 현황

한·중 어업 공동 위원회의 매년 회의 내용에 따라 한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받은 중국 조업유형은 저인망, 위망, 자망, 오징어 낚시와 일반 어획물운반선이 있다. 자료에 따라 한국은 어업협정을 발효 후에 2001년~2011년 한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어획량은 68만 톤이고 허가된 입어 어선수는 2001년 2796척부터 2013년 1600척으로 해마다 점차 줄어든다. 그 이후는 2015년까지 입어허가 어선수는 다 1600척이다. 어획할당량은 어선수에 따라 조정하고 2001년 협의 할당량이 164,400톤이고 이후는 매마다 점차 줄이고 2013년~2015년에 매년 협의 할당량이 6만 톤으로 정하였다.

구 분	01~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16년
어선 척수	2,796	2,531	2,250	2,100	1,975	1,917	1,859	1,800	1,750	1,700	1,650	1,600
어획량(t)	164,400	93,000	83,000	77,500	72,900	71,930	71,000	70,000	67,500	65,000	62,500	60,000

(자료: 해양수산부)

<표5-2> 01년 이후 중국어선 입어 규모

제2절 어업분쟁 관련 양국의 법률 및 문제점

가. 한국

(1) 어업분쟁과 관련 법률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은 체결국으로 상대국 어선이 개발 및 해양자원을 이용할 때 엄격하게 상관법률을 준수하고 아래 조치를 제정한다.

(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법> 제4조(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은 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航行) 또는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電線) 또는 관선(管線)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무기와 설비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한다.

<해양경비법> 제 17조는 무기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한다. 선박 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 벌금에 대한 규정

2013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면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무허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하는 자,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경우,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 어업 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에 따라 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의 하면 시험, 연구 등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는 허가 사항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는 , 또는 의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 등에 사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고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담보금의 보관·국고귀속 및 반환 등과 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에 대한 상세히 규정을 한다.

(2) 문제점

한국 정부는 수산 자원 관련법률 수정을 매우 중시한다. 실제 상황에 따라 문제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맞춤형 조치를 제정한다.

법률 상권 조례를 시행할 때 부분적 조치를 적시에 조정하며 법률의 활용성을 높이고 효과가 확실하다.

그런데 복잡한 조업 조건 및 절차 규칙이 중국어선이 빈번하게 한국해경에 잡히는 주요원인중 하나이다. 중국 어선이 한국 측 수역에 진입하면 <협정>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정금지구역과 관련된 특정 수역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게다가 한중 양국은 매년 <협정>에 따라 개최한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은 여러 번 어선의 입어 요구수준을 높인다.²²⁾

이 외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중국 어민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폭력저항을 초래한다. 고액의 벌금도 중국 어민들의 저항이 폭력화, 조직화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다.

나. 중국

(1) 어업분쟁과 관련 법률

22) 姜玥,《中韓海洋漁業資源法比較研究》, 2012.6.10

해양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은 아직 상관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단지, 분쟁과 관련한 규정은 어업 법률에 섞여 있다.²³⁾

1998년 1월 5일에 공포된 <어업행정처벌규정> 제16조는 중국어선이 체약국 참석한 국제 어업조약 및 공인한 국제 관계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어선이 외국에서의 조업과 관련된 법률이 없고 분계선을 넘은 불법조업이 빈발한 성(省)이 각자 규칙을 제정한다.

산둥성을 예를 들면 2011년에 27척이 분계선을 넘은 불법조업이 확실하여 각 선마다 벌금 5만원을 부과하였고 어업허가증을 6개월간 정지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유류 보조금을 취소하고 선장직무증서는 6개월을 정지하였다. 또한 상관어업행정주관 부서의 주요 책임자와 어항 감독, 복날 휴어(伏季休漁)의 관리 책임자에게 통보하였다. “삼무”, “불법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불법조업 어선을 압류 하였다.

북한 동쪽해역, 북·러, 한·일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어선을 처분할 뿐 아니라 소속된 대리기업의 대리자격을 취소한다. 비정상적 경로로 한·일, 불·러 민감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두 어선이 불법입어로 간주된다. 위반 정도가 심한 어선의 경우 모두 불법어선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수속처리를 중지한다.

산둥성 위해시를 예를 들면 2011년 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시의 어선이 불법적으로 한국이나 북한 접근수역에서의 조업 제지, 외국에 조업질서를 지키고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정 확보, 외국에서의 불법 조업을 엄중히 막고 해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한 법률에 따라 공고한다.

- ① 우리 시 어획 생산 활동을 하는 회사나 개인마다, 반드시 본 공고를 지켜야 한다.
- ② 외국에서 어업 생산 활동을 하는 모두 어선이 반드시 국가 어업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어획 협의를 달성하는 것은 무조건 무효이다.
- ③ 어떠한 어선도 다른 나라의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금지한다.

23) 張珉含, 《中韓漁業爭端解決法律研究》, 2015.4

④ 어떠한 회사나 개인은 타인에게 협조하거나 조직을 만들어 다른 나라 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획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을 판매나 임대 등 양도를 금지한다.

⑤ 허가를 받고 다른 나라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마다 조건에 따라 전 과정 GPS 시스템을 열어야 한다. 시스템이 고장 나면 반드시 귀항 수리해야 한다.

⑥ 허가를 받고 다른 나라 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두 어선이 중국정부와 관련된 쌍방, 다방 어업협정과 국제 공약을 엄격히 지키고 허가된 조업방식, 예정시한과 구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법률에 의해서 다른 나라 주관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불법 도구를 금지하고 다른 나라 영해에 입어조업을 금지된다. 주변 나라 민감한 분쟁 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폭력 저항을 금지한다.

⑦ 허가를 받고 다른 나라 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두어선이 중국정부 어업주관부서의 관리에 따라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철거 통지를 받으면 무조건 한정된 시간 내에 철거해야 한다.

⑧ 본 공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업부서,公安변방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산동성연해선박변방치안관리조례> 등 법률 및 규정을 근거로 엄격하게 처리한다.

(a) 다른 나라 수역으로 불법 입어나 조직을 만들어 진입하는 경우,公安변방 기관에 10000~5000위안의 과태료를 지불하고 불법 소득이 있으면 얻은 물건을 압수하고 불법 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지불하고 직접 책임자의 출해 변방증(出海邊防証件)을 취소한다. 심한 경우에는 선박을 압류할 수 있다.

(b)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어업주관부서에 10만 위안의 과태료를 지불하고 상황에 따라 어획허가증을 6개월 이상 정지하고 어선 당해 연도의 유류 보조금을 취소한다. 어선 및 선주의 한국과 북한 입어 신청 자격을 3년간 정지한다. (당해 연도와 이후 2년을 포함)

(c) “삼무”선박이 조업하는 경우에는 <농업부,公安부, 교통부, 국가 공상행정 관리 국, 관세청은 청리, 취소 “삼무”선박에 대한 공고>의 규정에 따라 어업,公安 변방부서로 선박을 압류한다.

(d) 불법적으로 섭외입어허가증을 양도, 전매, 임대한 경우에는 법률 근거의 처벌 외에 한국과 조선으로 입어 허가를 신청 자격 또한 취소한다.

(e) 허가를 받은 어선이 GPS 시스템을 안 열고 주관부서의 규정 시한 내에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은 경고이고 세 번째 발각 시 어선 유류보조를 1개월간 정지한다.

(f) 국가 기관 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법>에 따라 처벌한다.

(g) 상술 내용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⑨ 선주, 선원과 사회각계는 어선 불법 진출이나 경계를 넘어서 조업하는 자를 발견하면, 관련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2) 문제점

현재 중국은 어업어획에 관한 법률,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어업법시행세칙>, <어업행정처벌규정>등이 있다. 외국에서의 어업조업과 관련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 외국인, 외국선박 어업활동관리 잠시규정>²⁴⁾ 뿐이고 본국 어민의 외국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한 전문 법률이 없다.

정부기관은 어업분쟁을 처리할 때 마땅한 법률근거가 없다. 현행 법률은 어업분쟁에 있어서 규정이 모호하고 불법어업의 종류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다. “통일 지도, 등급별 관리”하는 원칙이 각 성(省)간은 규정을 통일 할 수 없고 정부의 통일 지도 능력도 약화하게 된다.

제3절 한·중 양국은 불법조업에 대응 동향

가. 강화 감독

(1)한국

한국정부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 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2016년10월11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24) 浅议IUU捕捞及我国规制 《河北渔业》2016年第7期(总第271期)

단속 강화 대책내용이 다음과 같다.

① 폭력 사용에 강력 대응

<해양경비법>에 의해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용화기 사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 강제력 행사이다.

도주 등으로 한국수역 내 검거가 어려운 경우 공해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한다. 추적 중 중국해경 등에게 통보하고 중국영해로 진입시에는 중국해경에게 검거 요청한다.

② 선제적 단속 활동

대형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하여 단속강도가 증가하다. 잠정 조치수역 순찰을 통해 중국 조업선 대상으로 홍보하며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해양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추진한다.

2016년 10월 중순 중국저인망 조업 재개시 대규모 세력을 투입하여 불법 조업 의지 차단했다.

③ 사법처리 강화

폭력 저항과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경우에 단속세력 위협 시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한다.

한국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에는 어선이나 어획물을 몰수 강화한다. 또는 몰수 판결 시 즉시 폐기처분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대검찰청)한다.

④ 도주어선 검거 등 외교적 조치

검문 검색할 때 취득한 자료를 중국 측과 공유 등 강력한 협력으로 도주어선 검거한다.

2016년 9월 중국해경국으로부터 충돌 혐의선박 조사 중이라는 회신 접수했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검거·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한다.²⁵⁾

(2) 중국

2015년 1월 1일 농업부에서 <원양어선위치 검측 관리방법>을 시행하였다. 어선의 위치 검측제도는 원양어업을 강화한 중요한 기술 수단이다. 이것은 국제 어업관리의 통행하는 것이다.

어선단속시스템은 또 어선검측, 통제 및 감독시스템이다.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system of fishing vessel, 약칭은 MCS시스템이고 국제 어업관리협회와 관련된 각 구성원이나 관련 국가는 어획어선이 포획활동 할 때 어종 보호 및 관리, 시설관리에 전면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7년부터 중국은 국제 어업관리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원양어업관리 수준을 높이고 어선이 바다에서 항해와 생산, 조업안정을 확보하여 농무부는 모두 원양어선에 차례로 나누어 선위검측을 시행하는 요구를 하였으며 2013년 3월까지 원양어선선위단속 시스템에는 128개 원양기업과 1899척 원양어선이 등록되었다. 이 외에, 중국 남통, (저우산 등의 지역에서 선박위치감지 시스템을 처음으로 설립하였다.

농업부가 2012년 1월에 공포한 <원양어선선위단속관리임시방법>이 폐기부터 원양어선선위단속업무가 점차 규범하게 된다. 어선항해조업 안전과 원양어업의 육성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약을 하였다.

근년에 국제 어업관리가 나날이 엄격해짐과 중국원양어업의 정밀화 수준의 향상에 따라 현재의 임시집행 방법으로는 관리가 어려워졌다. 관련 도시의 주요어업관리부와 관련기관과 원양어업기업의 의견의 자문을 기초로 하여 선박자동식별 시스템(AIS)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동성을 예를 들면 2015년 한국에 입어어선관리를 강화하고 어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한국에서 어업생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산동성섭한(涉韓)입어어선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어선에 대한 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입어어선이 GPS, AIS를 설치하고 정상 운행을 유지해야 하며 출

25) 국민안전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 2016.10.11

항 조업할 때 전 행정에 설비를 열어 어선의 무선주파수 인식 태그가 반드시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태그 유효를 확보해야 한다.

제4조 어업어선이 어선의 지정한 위치에서 검증카메라를 설치해야 하고 전정이 어선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 조업 할 때의 정보를 기록한다.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선의 뚜렷한 항행, 조업자료 등을 확보하고 어업집법기구들이 예비 점검한다.

제6조 입어어선이 진입 이전에 성대의 지속 지대는 성, 현 어업집법기구가 어선정보, 안전설비, 선원자격증, 카메라검증 등에 대한 검사검수를 하고 검수 합격하면 성, 시, 현 3급 어업행정 집법 기구와 이원이 <섭한(涉韓) 입어어선 설비설치 검수합격 증명>에서 사인하고 확인한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뱃머리에 서있는 컬러 사진을 제공하여 한국입어허가증과 표지판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개선 기한을 주고 개선 이후 여전히 불합격하면 입어 자격을 취소한다.

제7조 입어어선에 대한 첫 출항 비자제도를 시행한다. 입어조업을 할 때 어선의 소재지나 정박지의 현급(縣級) 어항감독기관에 출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입어 어선위치 단속 및 응급 정보는 소속한 현급(縣級) 어업 행정주관부서가 책임지고, 전문기구와 조직은 상급 어업행정주관부서와 입어어선의 정보를 처리하며, 입어어선 진출 신고할 때 어업 안전 응급 구원 지휘 시스템을 통해 GPS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시킨다. 입어 위치를 확인한 후에 한국 수역 출입을 허락한다.

나. 처벌 강화

(1) 한국

2015년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불법어업(IUU) 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른 조치다.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도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어선이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몰수·폐선을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한국과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지도선 공동순시를 3회, 교차승선을 2회 하는 등 양국 어선의 위반 조업 방지에 협업한다.

서해 어업 관리단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42척을 나포하고 담보금이 101억 원 부과해 이 가운데 60억 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담보금 미납자 23명을 구속 조치하고, 불법어획물 61t(위판대금 5천4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정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중국어선 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조업 어선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등 연내 중국과 공동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²⁶⁾

2016년 3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악의적인 담보금 미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중국어선을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몰수하기로 했다.

해경은 그동안 담보금을 내지 않더라도 공무집행방해나 영해 침범 등 죄질이 중한 선박을 제외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해 왔다.

중국 선주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고의로 담보금을 내지 않고 중국어선 선장들이 ‘몸으로 때우게’ 하는 방식으로 선박을 회수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에 해경은 죄질에 관계없이 올해부터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불법 중국어선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해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기로 했다.

특히 해경은 위탁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몰수 선고되는 어선은 폐선 시키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해 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경은 중국 선주들이 다른 제제보다 어선의 몰수와 폐선 등 경제적 제재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고의적인 담보금을 미납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미납한 사례는 2013년 59건에 63억 원, 2014년 31건에 29억 5천만 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46건에 53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황준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이번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억류 및 폐선 조치 강화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와 같은 효과가 있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²⁷⁾

26)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7)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 중국

<산동성섭한(涉韓) 입어어선관리방법>은 벌금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다.

제 11조는 해양 어획어선이 규정에 따라 GPS, AIS²⁸⁾ 시스템, 무선주파수 인식 태그를 설치 안 하고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산동성 어업항구와 어업선박관리조례>의 제39조 제4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개선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선박의 주인이나 경영자에게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시에 GPS시스템을 키지 않는 어선에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소환, 세 번째 한국입어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3조 무효한 선박명, 선박번호, 증서나 도용 타선선명, 선박번호, 증서의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어항 감독행정처벌규정>의 제16조에 따라 선주인과 경영자에게 선박가격 2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14조는 어업어선 경영자는 어업선원증서, 전문 기초훈련 합격증서를 못 가지고 있는 선원을 구하는 경우에는 <산동성 어업항구와 어업선박관리조례>제39조 제5항에 따라 매 1 사람을 고용하면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5조는 어업집법기구가 조사를 통해 무허가 입어, 무허가 한국 영해 진입, 특별금지구역에 진입, 폭력 저항 등 불법행위가 확실하면 <어업법> 제42조에 따라 5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경우에 어구를 압수하고 어획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공안기관으로 인계하고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4절 한·중 어업 협력 방안

가. 한·중 어업협력의 의의

(1) 폭력 충돌이 줄이고 어민 안정을 지킨다.

<한중어업협정>체결한 후, 중국어민과 한국해경의 충돌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황해 계선을 그거나 한중양국 외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다. 협정은 불법어민에 대한 벌금의 금액이 비교적으로 크고 각국의 벌금의 상한선을 안 정하여 벌금은 원화 2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한

28) AIS는 디지털 VHF 무선 트랜스폰더 시스템

다. 일반 어민의 생활수준이 넘친다. 그러므로 한국 집법공무원에게 악감정이 강하여 벌금이 피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 양국 간의 어업협력이 강화해야 하고 공동 집법의 협력과 처벌 세칙의 공동 제정을 필요하고 폭력 사건이 감소할 수 있다.

(2) 양국생태어업의 발전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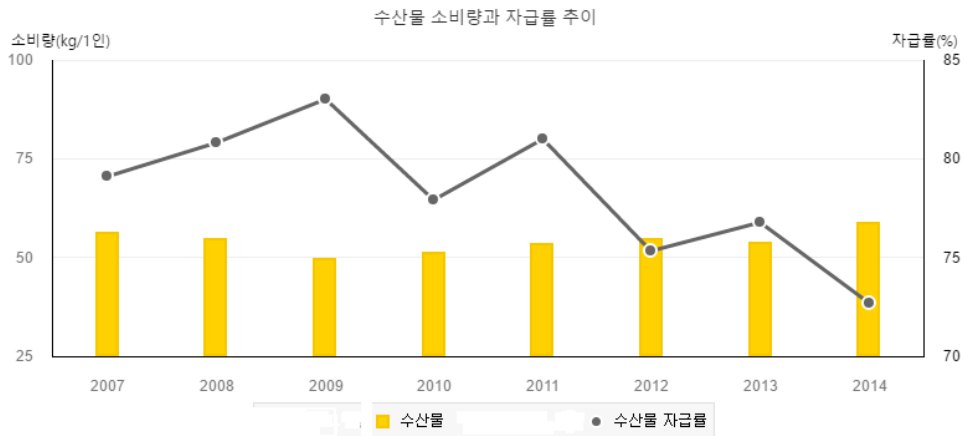
황해는 한국과 중국의 공동해역 및 어장으로 근연에 어업자원이 급속 감소로 인하여 즉시 어업자원을 보호의 효율적인 조치를 채취하고 어업자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겠다. 그런데 <한중어업협정>은 계선을 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양국은 황해어업자원 지속적으로 발전에 체계적인 협력이 없다. 만약에 어업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결과 황해자원이 고갈할 수 있다.

(3) 양국 어업무역 경제를 촉진

한국은 세계에서 수산품의 소비강국을 속하지만, 근년간 해양오염이 심해지면서 어업자원의 감소 등 이유로 인해 자급률이 감소하고 수산품의 생산량이 국민의 수요를 달성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한국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01년 42.2kg에서 14년에 58.9kg으로 증가 추세이고 이처럼 수산물 소비가 늘어난 것은 국민소득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져, 수산물이 건강식품으로서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산물 자급률은 01년 81.0%에서 05년 64.2%로 감소하였으나, 09년까지 증가 추세, 10년 77.9%로 감소 이후 11년 81.0%로 증가하였으나 14년에는 72.7%로 감소하였다. 29)

29) 출처 : 어업생산총계, 식품수급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5-1> 수산물 소비량과 자급의 추이

1인 1일당 국가별 어패류 소비량(2011년도 기준)에 따라 한국 159g, 일본 147g, 중국 90g, 프랑스 95g, 뉴질랜드 71g, 노르웨이 146g, 스페인 116g, 미국 59g이다.³⁰⁾ ,

한국과 중국의 거리가 가까워서 무역 운송 원가가 낮다. 어업자원의 협력을 강화하면 쌍방어업이 대외무역에 발전에 이롭다. 근연에, 해양오염이 심각하면서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큰 영향에 미친다. 어업자원의 감소문제는 양국의 수출업에 큰 충격이 되었다.

나. 한·중 어업 협력 방안

(1) 중국 선박의 감소, 어민들의 업종변경 인도

2003년 중국 농업부는 어민들의 업종변경 작업의 실시방법을 하달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다.

첫째는 정부의 보조가 비교적 낮으며, 둘째, 어획에 종사하는 노동단체가 크며, 업종변경의 실현이 쉽지 않고, 셋째는 어민자신의 문화수준이 너무 낮아서, 다른 업종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의견은 먼저는 중국정부가 어민들의 업종변경에 대한 보조를 증

30) [http://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1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17)

가시켜야 하며, 노년층의 어민에 대한 실버 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그 생활에 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둘째는 지방해정은 어업회사선원 고용 규정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선박은 반드시 몇 명 이상의 전문선원을 유지하여 야 임시선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전문 어업노동자의 증가를 제어한다. 중앙정부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업종변경 기술배양 훈련 발전에 보조하여야 하며, 업종변경의 외지가 있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업훈련을 무료로 실시하여, 그들이 업종변경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주동적으로 신청하는 어민들에게는 더 나은 생활보조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어민들의 업종변경의 실현을 촉진시킨다.

(2) 엄격한 할당량제도 실시

중국어선의 수는 많고 어민도 많으며, 동시에 인구가 많은 시장이 커져서 각 대형어업회사와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대량 포획으로 이어진다.

중앙정부는 반드시 각 지방정부 및 어업 관리 기구에 대하여 할당액 제한 제도를 실시하여, 매년 한·중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할당액에 의거하여 각 지방에 할당량을 분배하고 각 어선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여 초과하는 부분은 어업기업과 지방정부가 동시에 처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VI 장 결 론

해양자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널리 퍼짐에 따라, 해양자원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한중간의 어업분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 나아가 근년간의 한중 어업분쟁은 한중외교문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당면한 어업상황을 적시에 조절을 하고, 피동적인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정식으로 입법하여 대외적인 어업관리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대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정치, 경제상의 손실을 최대한 피하는 동시에 국내어장의 치안관리 및 해양어업 분쟁의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

그 외에 어업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한중양국의 협력을 필요하다. “쟁의를 내버려 두고, 공동 개발”을 이루고 쌍방어업의 공동발전문제에 대한 실체적 고려해야 한다. 중한 양국에 발전위해 어떤 쟁의 수역의 실제통제권을 쟁탈하지 않는다. 양국은 신시기에 공동적으로 경제를 번영하게 발전을 시켜야 한다. 어떤 것보다 충돌만 피하고 책임을 나눌 뿐만 아니라 어업 공동발전을 추구를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李浩宇, 魯直: <신 세계의 이슈>, 《環球時報》 (2004년 06월 04일, 제3판)

張揚, 《韓中漁業協定的研究》, 2015. 06. 07

李浩宇 魯直; 專屬經濟區 新世紀的熱點[N]; 中國漁業報; 2004年 5

中國新聞網: 《中韓漁業協定》平穩順利實施十年, 2011.4.9

于先波 張吉棟 邵利軍 關於我國近海漁業資源捕撈過度的情況與對策 威海市文登區海洋與漁業執法大隊, D922.65

陳新洲, 丁錫國. 渤海日趨“荒漠化”漁業資源衰竭加劇 [N]. 經濟參考報,

楊 瑾 《大力發展遠洋捕撈業 振興海洋經濟》, 2012

戴瑛, 淺議IUU捕撈及我國規制, 《河北漁業》, 2016년 제7기 (총 제271기)

姜玥, 《中韓海洋漁業資源法比較研究》, 2012.6.10

張珉含, 《中韓漁業爭端解決法律研究》, 2015.4

淺議IUU捕撈及我國規制 《河北漁業》2016年第7期 (總第271期)

<한중어업협정>

국민안전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 2016.10.11

연합뉴스, 무단 전채-재배포 금지>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채 및 재배포 금지

농림수산식품부, <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안 연구> 2012.5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2006년 9월 20일). “<중국의 이어도 시비는 국제법적으로 부당하다.>”. 월간조선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 (국제법) (2005년 4월 07일). “<(내 생각은...) 중국, 해양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중앙일보, CNN

자료: 중국 어업 연감 중국 국가 해양국 <2015년 중국 해양환경 상황 공보>

어업생산총계, 식품수급표

<http://blog.naver.com/choisttt/2208242694681>

<http://www.chinashipnews.com.cn/show.php?contentid=641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2

[http://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1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17)

<http://news.qq.com/cross/20161114/V59I7L2P.html#0>

